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44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구자근 · 권영진
강선영 · 조은희 · 강대식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